

【 주간이슈 】

유럽연합 경쟁법 상의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과 시사점

이승준 부연구위원

이종욱 연구원

-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을 채택하여 보험산업의 경쟁촉진적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연장함.
 - 지난 2003년에 제정되었던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로 일몰됨.
-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는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제3항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럽연합은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의 제정을 통해 일부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명문화하여 왔음.
- 새로 채택된 일괄면제규정은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험통계의 축적 및 연구와 공동(재)보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산업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함.
 - 보험은 보장하려는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함에 있어 과거 경험통계의 축적과 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특정 형태의 리스크는 여러 (재)보험회사가 공동인수해야만 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님.
 - 하지만 기존에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받아 오던 표준약관과 안전장비의 시험 등과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 우리나라도 보험업법의 상호협정 인가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명문화할 경우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분명해 질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상 공동행위의 인가나 보험산업 적용제외의 명문화를 통해 경쟁촉진적인 보험산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 법률상 적용이 제외되거나 공동행위를 허가한다고 해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가능함.

본고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배경

- 유럽연합(EU)은 2010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1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보험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일괄면제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채택하였음¹⁾.
 - 2003년에 채택된 일괄면제규정²⁾은 지난 3월 31일부로 일몰되었으며,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일괄면제규정³⁾은 보험산업의 공동행위 중 정보수집 및 분석과 공동(재)보험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면제를 연장함.
 - 하지만 기존에 면제되었던 표준약관과 안전장비의 시험 등과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일괄면제규정에서 삭제하여 일반 경쟁법의 적용대상으로 전환함.
- 유럽연합은 보험산업의 일부 공동행위가 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며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여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 리스크를 분산하고 집적하는 과정을 통해 관리하는 보험산업에서 정보의 공동 집적 및 관리는 리스크 보장에 필요한 보험료 및 비용 산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받고 있음.
 - 또한 공동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은 신규 및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보험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 경쟁법의 보험산업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유럽연합의 공동행위 금지조항과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의 경과와 그 내용 및 논리를 살펴봄.
 - 또한 보험산업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내 공동행위에 대한 적용 및 적용제외에 관해 고찰하고 이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1) European Commission, "Antitrust: Commission Adopts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for Insurance Sector", Press Release, 24 March 2010
2) Commission Regulation(EC) No. 358/2003
3) Commission Regulation(EU) No. 267/2010

2. 유럽연합의 공동행위 규제와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의 경과

□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이전 EC 조약 제81조)⁴⁾는 부당공동행위금지 및 이의 적용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제1항에서 유럽 공동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간의 협정, 협회의 의사결정, 공동행위(이하 공동행위 등)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제2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협정이나 의사결정에 의한 행위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됨을 기술함.
- 제3항에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경제적 효율을 증진하고 또한 그 편익의 상당부분을 소비자가 향유하는 경우, 제1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표 1> 공동행위 금지에 관한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

① 다음의 행위들은 유럽 공동시장에 부합하지 않아 금지된다. 기업들 간의 협정, 기업들로 이루어진 협회의 의사결정, 그리고 회원국 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을 왜곡, 제한,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공동행위, 그리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 (a) 직·간접적으로 구매가격 혹은 판매가격, 기타 거래 조건을 고정;
- (b) 생산, 시장, 기술 개발, 혹은 투자를 제한;
- (c) 시장 혹은 공급처의 공유;
- (d) 유사한 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차별적 조건을 적용;
- (e) 본질적 또는 상관습 측면에서 무관하고 부차적인 사항을 근거로 계약을 결정.

② 이 조항에 따라서 금지되는 모든 협정 혹은 의사결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③ 그러나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기업들 간의 협정,
- 기업들로 구성된 협회의 의사결정, 그리고
- 공동행위가 상품의 생산과 유통의 개선에 기여하고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면서 그 결과 발생하는 편익의 공정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 (a)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가피하지 않은 제약을 기업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 (b) 관련기업에 해당 상품의 실질적 경쟁을 제거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 제3항을 보험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규칙의 제정과 운영방침을 담은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제1534/91호가 1991년 5월에 제정됨.

4)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2008/C 115/01) Article 101 (ex Article 81 TEC):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기존의 EC 조약 제81조는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가 됨.

- 제1조에서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험산업 공동행위 등에 대하여 제101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하는 위원회 규칙(이하 해당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표 2> 이사회 규칙 제1534/91호에서 허용한 보험산업 공동행위

- a) 집단적인 통계나 청구 등에 기초한 공동의 위험보험료 산정
- b) 공동표준약관의 제정
- c) 특정 위험종류에 대한 공동 보장
- d) 청구의 결제
- e) 안전장치에 대한 테스트와 인가
- f) 악화된 위험(aggravated risks)에 대한 등록과 이에 대한 정보

- 제2조에서 해당 규칙의 기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과 규칙의 제정에 필수적이었던 여건이 바뀔 경우, 해당 규칙을 취소나 변경하도록 함.
- 제3조에서 해당 규칙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함⁵⁾.
- 제4조에서 새로운 회원국 또는 1962년 3월 13일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공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해당 규칙의 적용을 유예함.
- 제5조에서 해당 규칙의 채택에 앞서 적어도 1달 전에 관계국 및 당사자의 논의를 위한 초안을 발표하도록 규정함.
- 제6조에서 위원회는 해당 규칙의 초안 발표 및 채택 전에 독점 및 거래제한행위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Restrictive Practices and Monopolies)⁶⁾와 논의를 거치도록 함.
- 제7조에서 해당 규칙에서 허용한 공동행위 등에서 실행조약 제101조 제3항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그 혜택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 유럽연합 위원회가 시행 중에 있는 해당 규칙의 효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해당 규칙의 도입 시점부터 6년 이내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에 따라 EC 위원회 규칙(Commission Regulation) 제3932/92호가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 제3항에 따른 보험산업의 경쟁법 적용면제 규칙으로서 1992년 12월 21일 제정되어 1993년 4월 1일부터 다음 보험산업 공동행위 등에 적용됨⁷⁾.

5) 1962년 2월 6일 EEC 이사회가 제정한 당시 경쟁법 조항의 실행을 위한 최초의 규칙인 이사회 규칙 제17호 제6조에 따름.

6) 각 회원국의 경쟁당국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경쟁정책 자문기구로 현재는 Advisory Committee on Restrictive Practices and Dominant Positions로 부름.

7) EC 위원회가 효율성 증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이사회 규칙 제1534/91호 제1조의 a), b), c), e)에 해당하는 공동행위가 포함됨.

- 집단적인 통계나 청구건수 등에 기초한 공동의 위험보험료 등의 산정
 - 보험계약, 청구건수 또는 청구금액 등에 관해 집계된 통계에 기초한 참조위험보험료) 또는 경험생명표 등의 산정과 이를 위한 공동연구 등을 포함함.
 - 공동표준약관의 제정
 - 소비자의 보장내용 비교 편의성과 위험분류의 통일성 향상에 기여
 - 특정 형태의 위험에 관한 공동담보
 - 특정한 범주의 위험을 보장하는 시장점유율 10% 이하 보험회사의 공동보험 또는 시장점유율 15% 이하 재보험사의 공동재보험
 - 안전장치에 대한 평가와 인증에 필요한 공통된 규칙의 제정
 - 기술적 조화 및 표준화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안전장치의 세부내용,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준수여부를 인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
- 이후 경쟁법 적용의 현대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 제1/2003호가 2002년 12월 제정되어 1962년에 제정된 경쟁법 조항의 실행을 위한 최초의 규칙인 EEC 이사회 규칙 제17호를 대체함.
- 이사회 규칙 제1/2003호의 채택으로 일괄면제규정 상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동행위 등은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짐.
 - 또한 이사회 규칙 제1/2003호는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 개별 회원국의 경쟁당국 및 법원의 권한을 확대함.
- EC 위원회 규칙 제3932/92호가 2003년 3월 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EC 위원회 규칙 제358/2003호⁸⁾로 대체되었고 다음 사항⁹⁾에 대해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 제1항의 적용이 면제됨.
- 집단적인 통계나 청구 등에 기초한 공동의 위험보험료 및 경험생명표 등의 산정과 배포
 - 특정된 경험리스크를 보장하는 평균비용의 계산과 사망률 및 사고율 등의 통계표
 - 미래의 청구 규모 또는 빈도 및 여러 종류의 투자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관한 일반적인 공동연구
 - 비구속적 표준약관(SPC: Standard Policy Conditions)의 공동 제정 및 배포

8) 이는 위원회 규칙 3932/92호를 2003년 4월 1일부터 대체하되 1년간의 이행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에는 일몰된 규칙도 함께 적용하였음.

9) 위원회 규칙 3932/92호의 연장으로 이사회 규칙 제1534/91호 제1조의 a), b), c), e)에 해당하는 공동행위가 포함됨.

- 보험계약의 수익성에 관한 비구속적 모형(models)의 공동 제정 및 배포
- 특정 형태의 위험에 관한 공동인수 및 공동재인수 등 공동담보를 위한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그룹의 설립과 운영
 - 공동보험의 경우에 관련시장 점유율 20%이하, 공동재보험의 경우 관련시장 점유율 25%이하
- 안전장치 및 이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유럽연합 수준에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 세부규칙 및 규제의 제정, 인정 및 배포

3. 새로운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의 주요 내용

□ 2009년 3월 24일에 EC 위원회는 이사회 규칙 제1534/91호 제8조에 의거하여 EC 의회 및 이사회에 위원회 규칙 제358/2003호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 보고서는 유럽경쟁네트워크(European Competition Network)¹⁰⁾와 함께 작업하였으며 일괄면제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
- 보고서는 효율산출을 위한 공동 정보 집적, 통계표 작성 및 공동연구, 그리고 공동 보험 및 재보험은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부터 연유한 공동행위이며, 일괄면제규정을 통해 계속해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함.
 - 개별 보험회사가 스스로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정부가 직접 시장에 대한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음.
 - 원자력, 테러위험, 그리고 환경재해에 관한 리스크는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없거나 인수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위험에 대한 공동 인수는 경쟁법 적용을 배제해야 할 특수성이 인정됨.

□ 보고서에 관한 회원국 전문가들의 검토과정과 공청회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0년 4월 1일부터 EC 위원회 규칙 제358/2003호를 대체하는 유럽연합 위원회 규칙 제267/2010호가 2010년 3월 24일 제정·공포됨.

- 단, 2010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은 2010년 3월 31일 현재 존재하는 보험산업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존 일괄면제규정(위원회 규칙 제358/2003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새 규정의 적용을 유예함.

10) 유럽연합 역내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와 정책의 공조를 위한 유럽연합 소속 27개국 경쟁당국의 전문가 네트워크

- 일괄면제규정의 갱신에 있어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의 집적, 통계 표, 공동연구에 관한 공동행위와 특정 위험에 대한 공동 보장에 대해 일괄면제규정이 갱신됨.
 - 여타 금융산업과 비교하여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 일괄면제규정과 같은 제도가 보험산업을 보호 내지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
 - 활성화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제도(부분 개정, 전면개정, 지침 공포 등)는 무엇인지 여부

- 보험은 보장내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계약체결 시 그 비용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산업과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과거 경험통계를 축적하고 이에 접근하는 것은 해당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수적 요소임.
 - 따라서 경험통계에 대한 축적과 접근을 위한 공동행위를 일괄면제규정의 대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개별 보험회사가 보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리스크(핵, 테러, 환경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 분담을 위한 여러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의 공동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보험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시장 점유율¹¹⁾ 등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공동 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일괄면제규정의 갱신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공동표준약관과 안전장치에 관한 적용면제는 갱신되지 않음.
 - 공동표준약관은 다른 산업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험에만 특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에 포함시키면 다른 산업을 차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유럽연합 차원에서 안전장치에 대한 표준이 이미 존재하므로 더 이상 기술적 조화 및 표준화를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규정을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11) 공동인수에 참여하는 (재)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공동보험은 관련시장의 20% 이하, 공동재보험은 관련시장의 25% 이하이어야 함.

4.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적용에 대한 시사점

- 유럽연합의 경우 실행조약 제101조 제3항의 적용면제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근거한 일부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일괄면제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있음.
 - 비록 그 범위는 축소되고 있으나 명문으로 규정된 적용제외를 통하여 보험산업은 특정 공동행위에 대하여 규제당국의 개입에 대한 불확실성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경쟁촉진성이 인정된 보험산업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적용제외를 검토해 보는 것도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고려하여 볼 수 있음.
 - 현재 보험업법 제125조에서 공동행위가 필요한 보험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상호협정에 관한 인가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명시적인 적용제외조항은 없음.
 - 현재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원자력보험 공동인수협정 등 총 10개의 손해보험 상호협정이 운영 중에 있음¹²⁾.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제19조에서 부당공동행위의 금지 및 이의 적용제외를 다루고 있으며, 제58조에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음.
 - 제19조 제1항에서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의 결정, 입찰담합 등을 부당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함.
 - 제19조 제2항에서 산업합리화,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항의 적용제외 요건을 규정함.
 - 동법 제58조에서 공동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진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함¹³⁾.

12) 이외에도 생명보험회사 간 상호협정 2개, 생손보 간 상호협정 1개 등 총 13개 상호협정이 운영 중에 있음.

13) 단, 해당 법령에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 경쟁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됨.(대법원 판례 1997.5.19 선고 96누150)

- 따라서 제19조 제2항에 따라 경쟁촉진적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 조항을 활용한 보험산업 내 일부 공동행위에 대한 적용제외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2년 만에 처음으로 산업합리화 및 품질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여 레미콘 업계의 공동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가한 바 있음¹⁴⁾.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사유로 산업합리화(공정거래법 제19조제2항제1호), 불황의 극복(동조 동항 제3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동조 동항 제6호)을 들.

- 또한 유럽연합의 일괄면제규정과 유사한 적용제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보험산업에 대한 적용제외조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험산업의 일부 공동행위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쟁법 적용면제 법리 및 경제적 논리와 함께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적 특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몰조항을 넣어 적용제외법 또는 조항의 경쟁촉진성 및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를 주기적으로 거쳐 합리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단, 법령으로 경쟁법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공동행위의 허가가 있다고 해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보험회사의 주의가 필요함.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면제 조항 또는 적용면제법이 실질적인 경쟁제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KiRi

1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레미콘 업계 신청 공동행위, 부분인가」, 2010.1.21

<별첨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상의 공동행위 금지와 적용제외 관련조항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첨 2> 우리나라 보험업법 상의 상호협정 인가 관련조항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 ① 보험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 가. 상호협정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나.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 다.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 라.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 마.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 바.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에 있어서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종류와 현재 영위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
 - 나. 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 다. 상호협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내용
 3.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 가. 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
 - 나. 상호협정 폐지의 효력발생시기
 - 다. 상호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